

2013년 동계방학 중 교외근로기관 신청안내 및 주요 질의응답

2013. 11



「2013년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」 개요

1. 목적

동계 방학 중 국가근로 장학생에게 전공 맞춤형 근로지 및 사회체험 기회 제공하기 위함

2. 신청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 중 2013년 2학기 1·2·3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들을 지원(단, 대학이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한 소속대학의 학생만 가능)

3. 지원내용

- 근로 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 (시간당 8,000원 지급)
- 주당 최대 40시간 근로 가능
- 기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

4. 신청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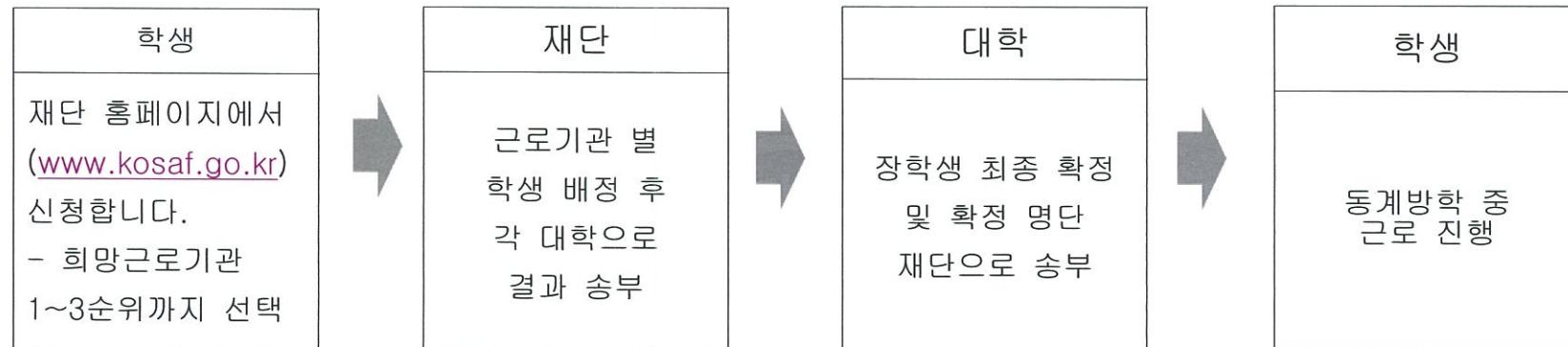
1차 '13.11.7.(목) 18시 ~ 11.17.(일) 24시

2차 '13.11.29.(금) 20시 ~ 12.8.(일) 24시

5. 교외근로기관

금번 「동계방학 중 교외근로」에 참여하는 교외근로기관은 시·도 교육청, 공공기관, 우수 중소기업 등이 해당됩니다.

6. 신청(선발)절차



7. 준수사항

매일 온라인출근부 및 수기출근부 작성

- 온라인 출근부 : 근로 후 5일 이내에, 근로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입력
- 수기 출근부 : 수기로 작성한 '수기출근부'는 대학의 국가근로 장학 담당선생님께 제출

「2013년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」관련 주요 질의응답(FAQ)

1. 「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」은 무엇인가요?

답변

「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」은 재단이 직접 교외근로기관을 확보하여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, 재단이 직접 학생에게 희망근로기관을 신청 받아 희망하는 순위별로 근로기관에 매칭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가근로와 다릅니다.

2. 동계방학 중 희망교외근로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답변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'동계방학중국가근로신청'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
한국장학재단 로그인 > 사이버창구 > 장학금관리 > 근로장학관리 > 동계방학중국가근로신청

3.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

답변

1차 '13.11.7.(목) 18시 ~ 11.17.(일) 24시
2차 '13.11.29.(금) 20시 ~ 12.8.(일) 24시까지 입니다.

4. 「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」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답변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준은 기존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동일합니다.

금번 「동계방학 중 교외근로」 신청은 2013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·2·3차 신청자만 가능합니다.

(단, 소속대학이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한 경우만 가능합니다.)

또한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 이내입니다.

5. 근로 가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답변

1차 「13.12.23(월) ~ '14.2.28(금), 10주간

2차 「14.1.2(목) ~ '14.2.28(금), 8주간입니다.

6. 「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」의 어떤 교외근로기관이 있나요?

답변

전국의 시·도 교육청, 공공기관, 우수 중소기업 등 많은 근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

7. 신청하면 누구나 「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」에 참여 할 수 있나요?

답변
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 중 2013년 2학기 1·2·3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들을 지원합니다.
(단, 대학이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한 소속대학의 학생만 가능,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
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
8. 선택한 근로기관 중 어느 근로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?

답변

1~3순위 근로기관의 수요에 따라, 학생이 희망하는 교외근로기관 혹은 다른 근로기관에도 배정 될 수 있습니다.

9. 근로 중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답변

교외근로지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.

사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및 소속 대학으로 문의 바랍니다.

10. 출근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?

답변

근로 종료 후 온라인 및 수기출근부를 작성합니다. (단, 온라인 출근부는 5일 이내에 입력)

작성한 수기 출근부는 소속 대학의 국가근로 장학 담당 선생님께 제출합니다.

11. 개인 사정상 (ex. 질병, 여행..) 근로를 빠질 때 친구가 대신 근무를 해도 되나요?

답변

허위근로·대체근로·대리근로 등 부당근로가 적발되면 지급받은 장학금의 환수는 물론, 향후 1년간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습니다.

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정정당당 대한민국, 국가근로장학생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.